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61호 2018. 11. 26.(월)

고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 2

공 고

- 용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 ----- 3
-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 제34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추가 공고 ----- 20

기 타

- 시정알림판 ----- 21

회람							
----	--	--	--	--	--	--	--

목포시 고시 제2018-16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목 포 시 장

1. 사 업 명 : 용해동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2. 사업주체
 - 성 명 : 주식회사 아람주택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47번길23
3. 사업승인 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171-113번지 외 46필지
 - 규 모 : 연면적 66,269.5546㎡, 지하2/지상18층~19층, 411세대
 - 공급유형 : 분양
4. 사업계획승인일 : 2017. 10. 10.
5. 착공일자 : 2017. 12. 22.
6. 준공예정일자 : 2020. 01. 25.
7. 주요변경내용 : 사업기간 변경
 - 변경전 : 2017. 12. 22. ~ 2019. 09. 21.
 - 변경후 : 2017. 12. 22. ~ 2020. 01. 25
8. 기 타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주택법 제19조에 의거 다른 법률 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목포시 공고 제2018-1469호

용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목 포 시 장

1. 사 업 명 : 용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목포시 용당동 960번지 일원
3. 공고기간 : 2018. 11. 26. ~ 2018. 12. 28.
4. 사업시행자 : 목 포 시 장
5. 사업기간 : 2019. 1월 ~ 2020. 12월(2년)
6. 사업예산 추산액 : 25,000천원(국비90% : 시비10%)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 가. 관계서류 : 실시계획서, 지번별조서
 - 나. 열람장소 : 목포시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담당

8.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목포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민원봉사실(☎061-270-3669, 81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 문 : 전라남도 목포시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담당

나. 전 화 : 061) 270-3669, 8118

다. 팩 스 : 061) 270-3455

라. 우 편 :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목포시 공고 제2018-1476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국민이 알아보기 쉬운 글씨체로 공인 변경
- ‘목포시장인’ 규격 변경: 2.4cm 정방형 → 3.0cm 정방형

2. 주요내용

- 공인의 글자를 구체적으로 표현 (안 제4조)
 - ‘한글’에서 ‘곧고 바른 한글체’로 변경
- ‘목포시장인’ 규격 신설 (별표)
 - 목포시장 직인 규격: 3.0cm 정방형
-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1호서식)
 - 업무관리시스템 기안 시 참조서식으로 활용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5조, 별표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해당사항 없음

7.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18. 11. 26. ~ 12. 17.(21일간)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17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 제출방법: 우편, 팩스(061-270-8355),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8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공고요령과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민원사무 전용공인이나 동판”을 “민원사무전용임을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이외의 공인”을 “공인”으로 하고,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써야”를 “알아보기 쉬운 곧고 바른 한글체를 사용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문작성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 인 의 구 분	규 격
1. 목포시장 직인	3.0cm정방형
2.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공인	
가. 4,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cm정방형
나. 6,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8cm정방형
3.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	1.6cm정방형
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 지출관, 지출원 및 분임자	2.0cm정방형
나. 출납원 및 분임자	1.8cm정방형
5. <삭 제>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서(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관련)



목 포 시



수신

(경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

「목포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의2(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공 인 명	
종 류	[] 공인 [] 인증기용 [] 전자이미지공인
구 분	[] 등록 [] 재등록 [] 폐기
등록(재등록) 및 폐기 예정일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및 폐기한 사람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	

- 붙임 1. 공인대장 1부.(별도송부)
2. 전자이미지공인대장 1부.(별도송부) 끝.

실무관

협조자

시행

접수

우 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

/ <http://www.mokpo.go.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목포시공인(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회계관계공무원----- ----- -----그 밖에----- ----- -----.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시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동장·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 ----- -----회계관계공무원----- ----- -----.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3조(특수공인) ① 시장·직속기관의장·사업소장·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전용공인이나 동판에 새긴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특수공인) ① ----- ----- -----민원사무전용임을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직속기관의장·사업소장·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③ ----- -----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자와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자는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생략)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문 작성 서식을 활용하여 전자문서로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생략)

-----, 전자이미지공인-----
-----.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삭 제>

② 공인-----
-----알아보기 쉬운
곧고 바른 한글체를 사용하
여야-----
-.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생략)

② -----

----별지 제1호서식-----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공 인 의 구 분	규 격
1.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공인 가. 4,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나. 6,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cm정방형 1.8cm정방형
2.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	1.6cm정방형
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 지출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	2.0cm정방형 1.8cm정방형
4. <삭제 2018.5.8>	<삭제 2018.5.8>

[별표]

공 인 의 구 분	규 격
1. 목포시장 직인	3.0cm정방형
2.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공인 가. 4,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나. 6,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cm정방형 1.8cm정방형
3.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	1.6cm정방형
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 지출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	2.0cm정방형 1.8cm정방형
5. <삭제 2018.5.8>	<삭제 2018.5.8>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경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

『목포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의2(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공 인 명	
종 류	[] 공인 [] 인증기용 [] 전자이미지공인
구 분	[] 등록 [] 재등록 [] 폐기
등록(재등록) 및 폐기 예정일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및 폐기한 사람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	

붙임 1. 공인대장 1부(별도송부)

2. 전자이미지공인대장 1부(별도송부) 끝.

실무면

협조자

시행

접수

우 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205 (율당동, 목포시청) / <http://www.mokpo.go.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붙임2 현행 「목포시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목포시공인(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18.4.8.>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시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동장·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97·11·10, 2018.5.8.>

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또는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3·20>

③ 삭제<2000·11·6>

④ 삭제<97·11·10>

[전문개정 2018.5.8.]

제3조(특수공인)

① 시장·직속기관의장·사업소장·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전용공인이나 동판에 새긴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 전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③ 시장·직속기관의장·사업소장·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8·4·30, 2000·11·6, 2018.5.8.]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자와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자는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12·3·30]

[전문개정 2012·3·30, 2018.5.8.]

제4조의2(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이동 <2018.5.8.>]

[본조신설 2012·3·30, 전문개정 2018.5.8., 제목개정 2018.5.8.]

제5조(새김)

① 공인에는 행정기관명을 새기고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12·3·30, 2018.5.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전문개정 2018.5.8., 제목개정 2018.5.8.]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 · 재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한다.<개정 2005·7·28, 2012·3·30, 2018.5.8.>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문작성 서식을 활용하여 전자문서로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7·11·10, 2005·7·28, 2012·3·30, 2018.5.8.>

③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5.8.>

[전문개정 94·9·30]

[제목개정 2012·3·30, 전문개정 2018.5.8.]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4·9·30, 2005·7·28, 2012·3·30, 2018.5.8.>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로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5.7.28, 2018.5.8.>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4.9.30, 97.11.10, 2012.3.30, 2018.5.8.>

제10조

삭제<94.9.30>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분실, 마멸에 따른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문작성 서식을 활용하여 전자문서로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없이 자치행정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4.9.30, 2005.7.28, 2012.3.30, 2018.5.8.>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4.9.30, 97.11.10, 2005.7.28, 2012.3.30, 2018.5.8.>

③ 삭제<97.11.10>

[전문개정 2018.5.8.]

제11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대장과 컴퓨터에 등록된 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2012.3.30, 2018.5.8.>

② 정보통신과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 사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시장·직속기관의장·사업소장·동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2012.3.30, 2018.5.8.>

[본조신설 2000.11.6]

[제목개정, 전문개정 2018.5.8.]

제12조(공인 사고보고)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9·30, 97·11·10, 2005·7·28, 2018.5.8.>

[제목개정 2018.5.8.]

제13조(공인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의 보관자는 그 직에 임명된 자이다. <개정 97·11·10, 2018.5.8.>

제14조(보관방법)

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보관함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보관자가 공인을 이중캐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7·11·10, 2018.5.8.>

② 삭제 <89·7·31>

[전문개정 2018.5.8.]

제15조(공인 날인)

① 공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개정 89·7·31>

③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 날인하거나 인쇄하여 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11·10, 2018.5.8.]

제16조(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5.8.]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조례 제174호 목포시공인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88·4·30 조13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7·9 조13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7·31 조14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9·30 조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8·19 조17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1·25 조1810>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10 조1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3·20 조2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6 조20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3·30 조27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6.1.조2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8.5.8.조3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8-1480호

목포시의회 부의 안건 추가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목 포 시 장

□ 부의안건 명

-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시 정 알 림 판

목포시 시정홍보 인지도 설문조사 실시



- 기 간 : 2018. 11. 26.(월)~12. 18.(화) [23일간]
- 설문대상 : 목포시민
- 조사방법 : 홈페이지,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다중이용시설 설문조사 등
- 조사내용 : 시정소식 획득매체, 홍보매체 선호도, 시정의 관심분야, 만족도 등
- 참여방법
 -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 ⇨ 참여/민원 ⇨ 시민참여 ⇨ 사이버설문

공보과 ☎ 061-270-3613

잡자는 지방세 미환금액 찾아가세요!

- 기 간 : 2018. 11. 21.(수)~12. 31.(월)
- 신청방법
 - 온 라 인 : 위택스(www.wetax.go.kr) ⇨ 환급신청 ⇨ 환급금조회·신청
 - 전 화 : ☎ 061-270-3282로 신청
 - A R S : ☎ 080-270-8880(무료), ☎ 061-270-8880(유료)로 전화 후 안내멘트에 따라 신청
 - 직접수령 : 지방세환급안내문과 신분증 지참 후 **납세자 본인**이 목포시청 방문
- ※ 단,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액 충당 후 잔액을 환급해 드리며, 지방세환급액보다 많을 경우 지급액 없이 체납세액 충당처리

세정과 ☎ 061-270-3282

주거급여·교육급여 신청 온라인 오픈 안내

- 기 간 : 2018. 11. 21(수) 오픈
 - ※ 11. 28.(수)부터 복지로 모바일앱에서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
- 신 청 인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 온라인신청은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 ※ 주거급여,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비 동시 신청 가능



주거급여 :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시 정 알 림 판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금지 시행 및 주차단속 유예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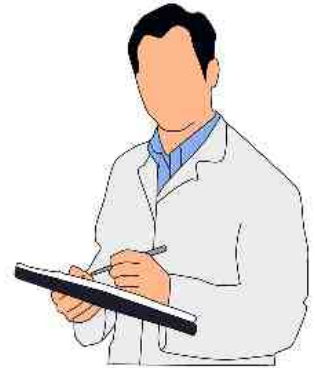
『환경친화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 9. 21.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금지가 시행됩니다.

- 시 행 일 : 2018. 9. 21.(금)부터
- 주요내용 :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차금지, 충전방해 금지
- 행정사항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단속, 위반행위자 과태료 부과
- 유예기간 : 2019. 3. 20.(수)까지
- 유예사유 :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홍보 및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함

환경보호과 ☎ 061-270-8675

국가 암검진 사업 안내

- 검진기간 : 연 중
 - ※ 연말에는 예약자가 많아 검진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연초부터 미리미리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암검진 : 무료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50% 부과기준 대상
- 일반암검진 : 본인부담 10% (단, 대장암·자궁경부암은 무료)
- 검진항목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암의료비 지원
 - 5대암(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 : 국가암검진자 중 암 확진자
 - 폐암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50% 부과기준 대상
- 제출서류 : 암검진표, 신분증



목포시보건소 ☎ 061-270-8921, 국민건강보험목포지사 ☎ 061-280-9303

2018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사·사·화에 담긴 염원 展' 개최

- 기 간 : 2018. 11. 29.(목)~2019. 1. 27.(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관
- 장 소 :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1층
- 전시내용 : 꿈과 희망, 삶의 행복 등의 바람을 담고 있는 문인화·서예·한국화 총 39점
- 체험프로그램 : '2019년 행복기원! 황금돼지 연하장 만들기'
 - 일 시 : 2018. 12. 1.(토)~12. 29.(토) ※ 매주 토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 대 상 : 목포시민 및 인접 지역 주민 등 20명(1회당, 선착순 마감)
 - 장 소 :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별관동 3층
 - 참여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
 - 참 가 비 : 2,000원(1인, 재료제공)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 061-270-8300